

●●● 미국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쟁법 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방향

주 미국 한국대사관 경쟁협력관 | 김치걸



1. 머리말

미국은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선지 만 1년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민주당 행정부가 공화당 행정부에 비하여 경쟁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8년 간의 공화당 정부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으므로 경쟁법 운용 면에서는 과거와 비교하여 눈에 띄는 대목이 많이 있다. 여기서는 최근 1년간 오바마 행정부가 중점 추진한 경쟁법 운용 실적을 정리해 보고,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경쟁법 집행방향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2. 전반적 기초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화당 행정부의 8년간 경쟁법 집행실적이 최근 50년 간의 경쟁법 집행 중 가장 미약한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특히, 부시(George Walker Bush) 행정부 기간 중 독점화 행위가 단 한건도 기소되지 않은 점과 기업결합에 대한 집행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연평균 70건 → 33건)한 점을 지적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Health Care) 산업의 경우에도 의료보험회사들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정부가 느슨한 태도를 견지하여 의료보험시장의 독과점화를 초래하여, 의료비를 인상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의 일상 경제생활에 있어서 시장이 집중된 분야로 의료산업과 무선통신산업을 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의 활력은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할 때 가능하다고 보면서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결합은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3. 부문별 실적

(1) 셔먼법 2조 운용보고서 철회

오바마 행정부의 경쟁법 집행방향을 제일 먼저 가능하게 한 것은 부시 행정부 후반기에 발표한 셔먼법(Sherman Act) 2조 운용보고서의 철회이다. 동 보고서는 당초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연간 사업으로 공동 청문회 개최 등 양 기관이 함께 보고서 작성을 추진하고, 보고서도 공동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결론 도출 부분에서 양 기관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여 법무부 단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2008년 9월 발표 당시부터 현존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대기업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¹⁾ 크리스틴 바니(Christine Varney) 독점금지국 차관보는 2009년 5월 12일 취임 후 첫 공식행사에서 동 운용 보고서의 철회를 발표하면서 “동 보고서는 반독점법 집행에 있어서 너무 많은 장애물을 설치했으며, 셔먼법 2조 관장 범위 안에서 일정행위에 지나친 신중함과 안전지대 설정에 있어서 호의를 갖게 했다”고 언급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경쟁법 집행방향 이 과거와는 다를 것임을 예고하였다.²⁾

(2)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작업 추진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은 1992년에 개정한 것으로서, 동 심사지침이 법무부 및 FTC의 실제 기업결합 심사업무와 괴리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³⁾ 또한, 현행 기업결합 심사지침이 1992년 지침 개정 이후에 발생한 경제적 및 법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2006년에는 기업결합 심사지침 해설서(Commentary on the Horizontal Mergers Guidelines)를 발표하였는데, 동 해설서와 1992년 기업결합 심사지침 간에도 차이가 많다는 것이 문제시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바니 차관보는 중점 검토할 분야로 시장정의, 시장집중, 경쟁효과의 3개 분야를 제시하였다. 먼저 시장정의 문제에서는 수요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업계에서는 넓은 범위의 대체상품을 포함하지만 수요자들이 보는 대체시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⁴⁾ 시장집중과 관

1) 동 보고서 내용 중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은 부분은 독과점 사업자의 위법 여부 판단기준으로, 비대칭테스트를 도입한 것이다. 독과점력이 있는 대기업의 행위에는 경제적 효율성이 많아 비용을 줄이므로 소비자들에게는 유익하다는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 규모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 규모보다 크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독과점 사업자의 행위를 적법하게 보는 입장이다. 동 내용에 대하여 FTC를 포함한 법무부 보고서 반대자들은 “동 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경쟁당국이 시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바니 차관보는 동 보고서 철회에 따라 FTC와 공동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는지에 대한 언급 등을 하지 않아, 본인의 발표와는 달리 셔먼법 2조 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3) 1997년에도 기업결합 심사지침의 개정이 있었으나, 당시 심사지침 개정은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이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시현(示現)을 주장할 때 경쟁당국의 검토기준을 제시한 부분적 개정이었다.

련하여 동 심사기준에서는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지수가 1,000에서 1,800 사이의 기업결합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경쟁우려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지만, 실제의 경우에서 경쟁당국이 HHI가 1,800 미만인 기업결합을 제지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쟁당국의 실제 사건처리와 기업결합 심사지침 설명 사이의 차이는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처리의 투명성 차원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쟁효과와 관련해서는 차별화된 상품시장에서 기업의 단독행위효과 측정문제, 가격 차별화에 영향 받는 소비자그룹 문제, 시장집중도 증가가 직접 이유가 되지 않는 증거⁵⁾를 경쟁효과 측정시 활용하는 문제 등이 검토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경쟁당국의 정책적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기업결합 심사지침 운용이 시카고학파의 영향을 받아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학적 분석에 너무 치중되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 이유이다.

(3) 농산품시장에서 경쟁법 집행 강화 추진

바니 차관보는 농산품시장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법 집행이 약한 분야라고 보고 있다. 축산, 양돈, 양계, 낙농 분야에서 대규모 출하회사들의 수요독점문제 및 종묘공급회사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농업분야의 경쟁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종묘산업에서의 시장집중화 문제, 유가공업에서의 시장집중화를 초래하는 기업결합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종묘회사인 몬산토(Monsanto)사와 델타&파인(Delta & Pine)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동을 걸어 면화씨라인의 분리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소고기 출하업체인 JBS사와 내쇼날비프(National Beef)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사를 4개사에서 3개사로 줄여, 축산농가로부터는 저가로 소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는 고가로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금지 시켰다. 이는 모두 농업분야에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경쟁당국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밖에도 농산물 유통의 수직계열화가 독과점력을 심화시키는지 여부의 검토 및 농산물 가격의 투명성 증대가 소비자에 유리한 친(親)경쟁행위인지 또는 카르텔을 유발하는 반(反)경쟁행위인지의 문제도 검토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4)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의 시장 감시 강화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통신시장의 집중화가 가격 상승을 초래, 미국 국민들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

4) 예를 들어, 고급 유기농 식품시장의 1위 업체인 홀푸드(Whole Foods)사가 동종업계 2위 업체인 와일드오츠(Wild Oats)사를 취득하는 사례에서, FTC는 양사간 결합으로 유기농 식품시장에서 심각한 경쟁제한을 우려하는 입장이었지만 홀푸드는 유기농식품은 전국적 판매망을 갖춘 대형 식품 체인인 자이언츠(Giants), 세이프웨이(Safeway) 및 심지어 월마트(Walmart)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양사간 기업결합이 유기농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 이런 유형의 증거로는, 종료된 기업결합의 실제, 결합 이후 경쟁효과, 기업의 기업결합 이후 계획, 기업결합 이후 경쟁에 대한 소비자 견해, 기업결합 당사회사간 경쟁의 역사적 추이, 관련 산업에서 실제 혹은 추진된 기업간 협력 등이다.

은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버라이즌(Verizon)과 AT&T사가 미국 무선통신시장에서의 빅(Big) 2로의 성장에는 부시 행정부 기간 중 허용한 기업결합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시장지배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심화시키거나 현재의 지배력을 지렛대로 이용, 다른 관련 시장에도 시장지배력을 전이시키려는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법무부 반독점국은 최근 대형 무선통신사업자인 AT&T가 애플(Apple)사의 아이폰(iPhone)을 자사의 계약자들에게만 독점공급하는 행위 등 무선통신사업자와 스마트폰 제조업체 간의 배타적 공급계약의 경쟁제한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⁶⁾ 실제로 지방의 중소형 무선통신사업자들은 AT&T의 이러한 행위는 무선통신시장의 시장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과 계약한 소비자들은 대형 무선통신사업자들이 지방소비자들을 외면하는 스마트폰 독점공급으로, 미국 소비자들을 아이폰 등 스마트폰(Smart Phone)을 사용하는 1류 소비자와 그렇지 못한 2류 소비자로 나누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Google)사가 미국 출판물협회 및 미국 저작자조합과 체결한 인터넷상 독점적 서적검색권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글이 모바일폰 이용 광고 검색 소프트웨어 업체인 애드몹(AdMob)사를 인수하려는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모바일폰 이용 광고시장은 최근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로, 경쟁당국은 구글이 인터넷 검색 광고시장의 지배력을 모바일폰 이용 광고시장까지 확장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⁷⁾

한편, FTC는 인텔(Intel)사가 델(Dell)사, 휴렛팩커드(Hewlett Packard)사 등 컴퓨터 제조업체에게 행한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거래거절 위협행위 등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행위로 판단하고 행정법원에 기소하였다. 우리나라와 EU 등이 인텔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TC가 장기간 침묵을 유지하자 미국 경쟁당국이 자국의 대기업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였으나, 금번 조치로 인하여 경쟁법 집행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의료산업 개혁에서 경쟁정책 강화

오바마 대통령은 높은 의료비가 자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가정경제를 파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의료체제 개혁을 공약사업으로 정하였는 바,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는 의료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의료비를 낮추겠다는 정책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6) 스마트폰 생산업체인 팜프리(Palm Pre)사는 2009년 6월부터 제3위 무선통신업체인 스프린트넥스텔(Sprint Nextel)사에게 자사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버라이즌과는 2010년 1월 말부터 공급하기로 하였다.

7)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바일폰 이용 광고 검색시장은 현재 10여개의 네트워크가 있지만, 구글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30~40%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① 보험산업의 경쟁법 적용 면제조항 폐지 추진

미국은 1945년 맥커런-퍼거슨법(McCarran-Ferguson Act)을 제정, 보험산업에서의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즉, 'Business of Insurance' 행위에 해당되는 보험사업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하되, 다만 보험사의 행위가 강제(Coercion), 위협(Intimidation), 집단배척(Boycott)에 기인한 경우에만 경쟁법 적용 면제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은 동법에 근거하여 보험료 공동 인상이나 독과점화를 초래하는 기업결합 등을 행한 바, 결과적으로 높은 보험료⁸⁾와 함께 지역에 따라서는 시장의 독과점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⁹⁾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산업에도 경쟁을 도입하여 보험료 인하를 추진 중으로, 맥커런-퍼거슨법 폐지법안은 하원 의료개혁법안에 삽입되어, 현재 의료개혁 상·하 양원 통합법안 작성을 위한 협상안에 포함되어 있다.

② 'Pay for Delay' 에 대한 정책 전환

법무부 반독점국은 특허약품(Brand Drug) 제약사가 복제약품(Generic Drug)의 시장 진입을 유예하기 위하여 복제약품 제약사에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Pay for Delay)를 경쟁제한성 관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¹⁰⁾ 그간 법무부는 동 행위가 특허약품 제약사의 특허권 행사라는 차원에서 소극적 검토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FTC는 특허약품 제약사와 복제약품 제약사 간에 복제약품 시장 진입 유예를 위한 대가 수수행위를 양사간 담합행위라고 보아 경쟁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FTC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복제약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연간 35억 달러라는 FTC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Pay for Delay' 제재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으로 FTC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던 법무부가 경쟁법 적용 검토 필요입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획기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 'Pay for Delay' 금지법안을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법안에 포함하려는 것이 FTC의 생각이지만,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고 있는 것이 제약요소로 남아있다.¹¹⁾

8) 1999년부터 2007년간 건강보험료가 120% 인상되었는데, 동기간 중 임금 인상은 29%였다.

9) 앨라배마(Alabama)주와 노스다코타(North Dakota)주의 경우는 1개의 건강보험사가 약 9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하와이(Hawaii)주와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주의 경우는 2개의 보험회사가 시장의 98%와 95%를 각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Pay for Delay'는 특허약품 제약사가 복제약품 제약사에 복제약품의 시장 진입을 유예시키기 위하여 일정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이다. 미국은 높은 특허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해치-왁스만법(Hatch-Waxman Act)을 통하여 특허약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다른 제약사가 복제약품을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FDA로부터 승인받은 첫 번째 복제약품 제약사는 180일 동안 독점적으로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특허약품 제약사와 복제약품 제약사 간에 복제약품의 시장 진입을 유예시키기 위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복제약품 제약사는 특허약품 제약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복제약품의 시장 진입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다. 'Pay for Delay'는 일명 'Reverse Payment'라고도 하는데 'Reverse'란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보통의 경우 특허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비하여, 'Pay for Delay'의 경우는 특허권을 갖고 있는 제약사가 복제약품 제조사에게 오히려 일정대가를 지불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11) 'Pay for Delay' 금지법안은 하원 소비자보호 소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아직 하원 또는 상원 전체 안건으로는 채택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존 레이보위츠(Jon Leibowitz) FTC 위원장과 일부 하원의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Pay for Delay' 금지법안을 의료개혁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③ 공공의료보험(Public Option) 도입 추진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의료보험기관을 설립하여 민간의료보험사와 경쟁하도록 하여 의료보험료를 낮추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험사간 경쟁을 통하여 보험사의 경영 혁신을 가져와 의료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지만, 민간의료보험업계는 공공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에 민간보험 가입자들이 공공보험으로 이동하여 민간보험사들은 도산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의료보험 도입법안은 하원의 의료개혁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상원의 법안에는 빠져있는 상태로, 상·하 양원의 통합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4. 향후 중점 추진 과제

지난해 1년 동안 현안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와 미국 내의 여론이 경쟁당국에 요구하는 분야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합리원칙 적용 재검토 논의

바니 차관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RPM, Resale Price Maintenance)가 종전과 같이 당연위법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리진(Leegin) 판결에서 결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서의 합리원칙 적용은, 그 후 미국의 Antitrust Community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FTC에서 RPM의 합리원칙 적용에 대하여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바니 차관보도 이에 가세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법 적용기준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의회에서도 RPM의 당연위법 적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그러나 독점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RPM의 당연위법 적용이 관철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RPM의 합리원칙 적용에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경쟁법 전문가들은 RPM에 당연위법 적용 법규가 입법화 되더라도 연방대법원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입법화 되는 과정에서도 대법원이 반대의견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RPM 제도에 경제적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브랜드(Brand) 간 경쟁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수집할 수 있는 가격정보가 많은 상태에서는 RPM의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경쟁법 집행의 국제적 수렴 강조

바니 차관보는 또한, 2009년 3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경쟁당국간 국제적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2009년 10월 국제관계 관련 모임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기업의 단독행위 심사(Unilateral Firm's Conduct)와 시정조치 수준, 그리고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언급한 바 있다. 바니 차관보는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법 운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EU 경쟁당국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도, EU 경쟁당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특별책임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약탈적 가격설정과 경제적 효율에 대해서도 EU 경쟁당국과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며, 시정조치수준과 관련해서도, 경쟁법 집행은 카르텔과 같이 당연위법이 아닌 합리원칙이 적용되는 곳에서의 과도한 제재수준은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인텔 사건에 대하여 EU 경쟁당국이 1억 4,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도 경쟁당국간 중요한 논의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¹²⁾

(3) 정부내 경쟁주창자 역할 강화

바니 차관보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국가경제정책 수립에서 경쟁문제가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Competition on the Table) 그는 “미국이 직면한 바 있는 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Fail)도 결국은 경쟁당국이 경제정책 수립단계에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정부 내에서 경쟁주창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5. 맺는말

이 글에서 언급된 것의 대부분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경쟁법 집행실적 및 방향을 소개한 것이다. FTC는 합의제로 운영되고 연방거래위원들의 구성이 정당의 역학관계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임제(獨任制)로 운영되는 법무부 반독점국보다는 집권층의 정치적 영향을 덜 받게 되므로¹³⁾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확연하게 달라진 분야가 많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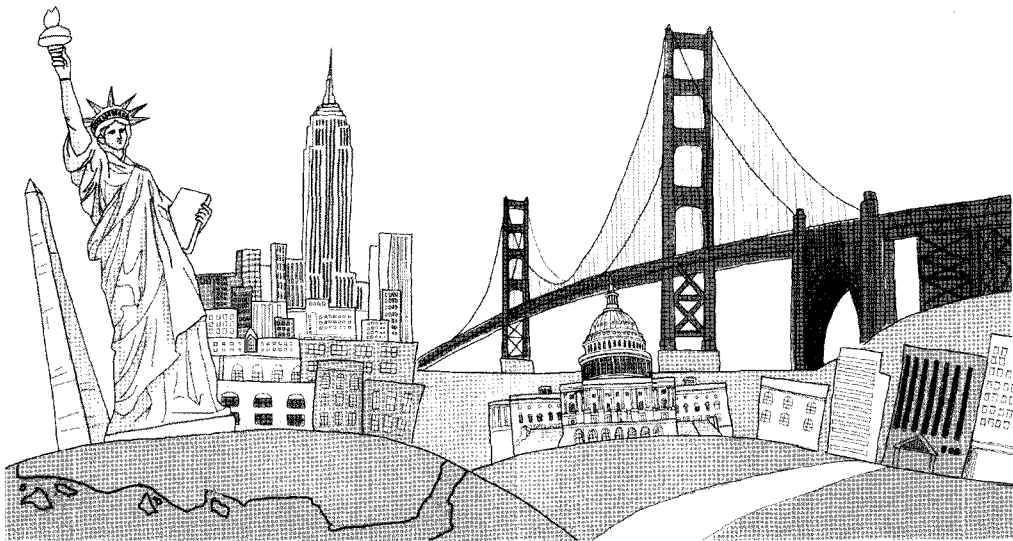
12) 미국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그동안 ICN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렴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었으나, 최근 EU 경쟁당국이 오라클(Oracle)사가 선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사 취득행위 제동과 중국 경쟁당국이 코카콜라(Coca Cola)사의 중국 후이원과즙(Huiyuan Juice)사 취득을 거부하는 조치를 보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바니 차관보는 부시 행정부에 비하여 경쟁법 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지만, 미국 경제상황이 아직도 침체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제회복이 우선이라는 '경기부양론'에 밀려 경쟁정책에 입각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법무부는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사와 콘티넨탈항공(Continental Airlines)사의 광범위한 업무협정 체결이 두 항공사를 하나로 묶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하였으나, 미국 교통부(DOT)는 양사 간의 업무협정 체결이 침체된 항공산업에 활력을 주고 양사의 경영에도 도움을 주어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법무부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판사들 중 일부는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친기업적인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다는 점도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경쟁법 운용에 있어서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제약요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쟁법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경쟁법 강화가 미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과거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집권 전반기에는 경제 회복을 이유로 경쟁법 집행을 약화시켰다가 경제회복이 더디게 되자 임기 후반기에는 경쟁법 집행을 강화했던 사실은, 아직도 미국에서는 경제 침체기에서의 경쟁법 운용에 좋은 참고로 인용되고 있다.



13) FTC는 임기 7년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각 위원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 인준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동일정당 소속 위원이 3인이 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현재 구성은 존 레이보위츠 FTC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의 민주당 소속 위원과 윌리엄 코바식(William Kovacic) 위원(전임 FTC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공화당 소속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